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구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9조 <기재 생략>	제1조 ~ 제9조 <현행과 동일>	
제10조 (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)	제10조 (구매대금 결제계좌 개설)	
① <기재 생략>	① <현행과 동일>	
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	② 제 1 항의 결제계좌는 구매대금 결제 및	
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	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하기로	
하며, 타 용도로 사용하여 구매대금 결제가	하며, 타 용도로 사용하여 구매대금 결제가	
지연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 손해는	지연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경우의 모든	
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<u>아무런</u> <u>청구도 하지</u>	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< <u>삭제></u>	
않기로 합니다. <신설>	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	- 약관변경
	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	권고 반영
	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	
③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	③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	- 약관변경
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	나,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	권고 반영
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	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	
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	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	
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	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은행과 약정	
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	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, 당좌대출의 이자	
	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.	
제11조 ~ 제18조 <기재 생략>	제11조 ~ 제18조 <현행과 동일>	
< <u>신설></u>	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	
	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	